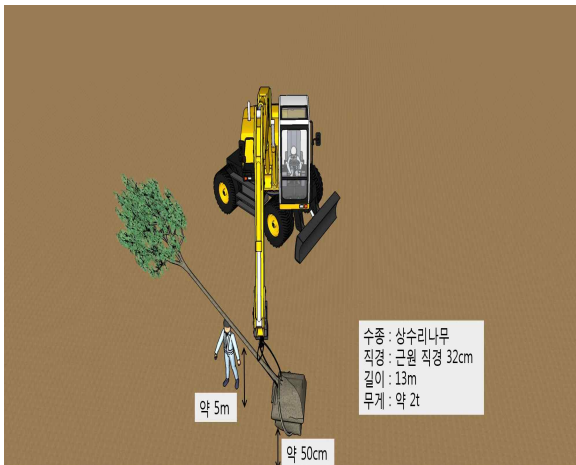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18. 5. 30(수) 대전 유성구 소재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○○조경현장에서 수목을 화물차에 상차하기 위해 슬링벨트로 묶어 굴삭기(백호우) 봄대 속에 건 뒤 뿌리부분을 들고 좌측으로 회전하던 중
- 뿌리부분이 지면에 부딪히면서 속에 걸려있던 슬링벨트가 이탈하여 떨어지는 수목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 미배치
 -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음
- 해지장치 미사용
 - 굴삭기 봄대 속에 볼트 등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슬링벨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나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음



재해 예방 대책

-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근로자 접촉 방지 철저
 -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 기계에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지정하여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
- 해지장치 사용
 - 볼트 등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슬링벨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개인보호구 착용
 -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보호구 착용을 확인하여야 함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